

직원대외활동규칙

제	정	2005. 07. 13.
개	정	2007. 07. 16.
개	정	2008. 11. 06.
개	정	2010. 09. 29.
개	정	2015. 04. 30.
개	정	2015. 12. 30.
개	정	2021. 10. 26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복무규정 제8조에 의한 직원의 대외활동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칙은 임원을 제외한 연구원 모든 직원의 대외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정의) 대외활동이라 함은 타기관의 용역(공동연구포함) 또는 자문 행위, 대학 등의 출강, 학술대회 등에서 본 연구원을 대표하는 발표 또는 토론,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본인 개인 명의로 발표하는 행위, 기타 다른 직을 겸하는 행위 등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. <개정 2008.11.6.>

제4조(허가)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①기관 간 계약에 의해 연구수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개인자격으로 허가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. <개정 2008.11.6.>

1. 중앙부처 및 공공(연구)기관과의 공동연구(집필포함) 참여과제
2. 전북지역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연구과제
3. 기타 원장이 정하는 과제

②대학출강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직원대외활동규칙

〈개정 2008.11.6., 2010.9.29., 2015.4.30.〉

③대학에 출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조건에 따라 출강허가신청서〈별지서식2〉를 작성,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. 〈개정 2008.11.6., 2015.4.30.〉

1. 출강대학 : 전라북도 소재 대학
2. 강 좌 수 : 주1회 1강좌
3. 출강일수 : 출강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수 이내

④제3항 3호의 경우 출강일수는 출강자의 연차일수에서 공제한다. 〈신설 2008.11.6.〉

⑤대학 출강 이외의 대외활동의 연차공제는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. 〈신설 2015.4.30.〉

제5조(사례금 신고) 사례금을 받는 대외활동을 할 때에는 원장에게 그 대외활동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단, 변동이 있을시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 〈신설 2021.10.26.〉

부 칙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07.7.16.〉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08.11.6.〉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10.9.29.〉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5.4.30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5.12.30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1.10.26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직원대외활동규칙

〈별지서식1〉 〈개정 2007.7.16.〉 〈삭제 2010.9.29.〉

<별지 서식2> <개정 2015.12.30.>

출강허가신청서

결 재	원 장

■ 출강허가 신청 내용(주/야간)

학 교 명 (소재지)	강의과목	강 좌 수	출강시간 (요 일)	비 고

상기와 같이 출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

신청인 소 속 :

직 급/위 :

성 명 :

전북연구원장 귀하